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서류 5일 만에 검토하라고?

한수원 '방사선 환경평가서' 초안 26일 발송 예정…공람까지 기간 촉박
영광군 "추석연휴 겹쳐 제대로 검토 못해"…한수원 "지난달 가안 보냈다"

정부의 제10차 전력기본수급계획을 통해 수명이 각각 10년씩 연장된 영광 한빛원전 1호기(왼쪽)와 2호기.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영광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절차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지자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영광군 등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평가서) 초안을 검토하고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제공되지 않아 사실상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11일 한수원과 영광군 등에 따르면 오는 26일 한빛 1·2호기 평가서 초안이 영광군에 전달된다. 영광 한빛원전 1·2호기는 각각 2024년, 2025년 설계수명이 만료된다.

한수원은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의 2(정보공개의무)를 근거로 수명연장을 위한 절차를 개시했다.

한수원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전남·북, 한빛원전반경 최대 30㎞)에 있는 지자체(영광·함평·고창·부안·무안·장성 등)에 평가서 초안을 제출하고 주민 공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는 초안을 받아 10일간의 검토기간을 거쳐 주민공람을 결정해야 한다. 초안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다.

문제는 한수원이 추석을 앞둔 26일 평가서를 제출하고 10월 5일을 주민공람 개시를 결정한 것이다. 검토기간에 추석 연휴기간을 포함시킨 것이다. 원자력안전법상 검토기간에 휴일이나 공휴일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다.

지자체들은 10월 5일까지 초안을 검토하고 공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추석 연휴(9월 28일~10월 3일)를 제외하면 검토 가능한 날짜는 5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한 달 전 가안을 먼저 보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수원 측은 "추석 연휴까지 감안해 8월 25일 가안을 보냈다"며 "가안에서 초안으로 변경된다고 해도 바뀌는 부분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자체와 주민들은 "노후한 원전을 10년을 더 운전하는데 5일만에 검토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평가서는 총 300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 10개의 장에 걸쳐 계속운전 개요, 환경·발전소 현황, 원전 사고로 인한 영향, 환경감시계획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자체도 "평가서에 나온 용어자체가 어렵고 고리원전 등 타 지자체 사례와 비교하며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실제 초안의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일부 주민들은 "노후원전 폐로기간전 까지 수명연장을 하려면 일정이 빠듯해 한수원이 긴 연휴까지 포함시키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한빛 1·2호기 수명 연장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 포화시점을 앞당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빛 1·2호기가 2025년과 2026년 폐로를 전제로 한빛원전 내 고준위폐기물 저장시설이 2031년 포화될 예정인데 1·2호기를 계속운영 하면 2029년 저장시설이 꽉차기 때문이다.

지자체에서 공람이 통과되더라도 수명연장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공람기관과 공청회에서 지역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내년 2월께 공청회 개최를 예상하고 있다.

오하라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교육홍보팀장은 "실질적으로 5일동안 공무원들이 3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초안을 읽고 보안요청을 하기는 버거울 것"이라며 "애초에 주민 의견 수렴 자체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짧은 시간 내 초안검토가 이뤄지는 것은 수명연장에 대한 절차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수원은 이사회는 지난 6월 28일 한빛 1·2호기 수명 연장을 결정하고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한빛원전 1·2호기는 2016년 국내 최초 핵발전소 격납건물 내부철판에서 부식이 발견되면서 올해 8월까지 한빛 1호기에서 45건, 2호기에서 57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전남 조합장선거 사범 154명 재판에

광주지검 수사 결과 발표…기소된 당선자 17명

검찰이 광주·전남지역 농협·수협·산림조합장 선거 사범 154명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박종근)과 산하 4개(순천·목포·해남·장흥) 지청은 지난 3월 치러진 제3회 농협·수협·산림조합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사범 수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검찰은 모두 301명을 입건 수사해 구속 6명 포함 모두 154명을 재판에 회부했다. 조합장 당선자 39명을 수사해 이 가운데 17명(1명 구속)을 기소했다. 조합원 20여명과 마을 이장들에게 17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전남 한 농협조합장 당선자와 조합원에게 현금 100만원을 제공하고 조합원 28명에게 전화 등을 이용해 지지를 부탁한 전남의 한 축협 당선자는 구속돼 재판을 받게됐다.

조합원에게 20만원을 전달한 전남의 또다른 농협 조합장은 영농회장과 공모 혐의가 드러났다.

지난 2019년 2회 조합장선거와 비교하면 입건된 선거사범(238→301명)과 기소된 선거사범(148→154명) 모두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 사범이 212명(70.4%)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 31명(10.3%), 기타 유형 58명(19.3%) 순이었다. 지난 선거에서 2명이 적발됐던 불법선전 유형은 올해는 없었다.

전체 입건자 중 44.9%(135명)를 고소·고발, 나머지는 인지수사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수억원 가로챈 '메신저 피싱범' 2명 징역 5년

자녀를 사칭해 부모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수억원의 금품을 가로챈 '메신저 피싱' 일당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이광헌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혐의로 A(여·30)씨와 B(여·36)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불특정 부모들에게 자녀인 것 처럼 긴급한 내용의 문자를 보내 부모들로부터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빼내고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자를 보내 상대방 금융 정보 등을 빼돌리는 이른바 메신저 피싱 수법을 썼다.

이들은 "휴대전화가 고장나 보험신청을 해야 하는데, 내 명의로 안 되니 엄마 폰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야. 신분증,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줘"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들에게 속은 부모들이 휴대전화에 앱을 깔면 미리 준비한 유심으로 번호를 이동시키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이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송금하거나 물품을 구매해 되팔았다.

A씨는 피해자 26명으로부터 9억500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금품을 가로챘고, B씨는 26명의 피해자에게 9억 4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곤경에 처한 자녀를 도우려는 부모들의 심리를 악용해 지능적이고 조직적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학교폭력으로 치아 7개나 손상됐지만…
법원 "가해 학생 사회봉사 징계는 부당"

법조계 "학폭 엄단과 어긋난 판결"

학교 폭력으로 피해자의 입술이 찢어지고 치아 7개가 손상됐지만 가해자에게 사회봉사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A학생 측이 광주시 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광주시 광산구의 한 중학교에 재학중인 A군은 지난해 11월 동급생 B군을 계단에서 안전시설 쪽으로 계속 밀어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해 입술과 치아를 손상하는 상처를 입혔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군에게 '사회봉사 8시간' 처분을 내렸다. A군 측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처분이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 자체는 인정하지만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처분을 내리는 건 과도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정도를 참작하면 학교에서의 신체·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폭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에 해당해 '경미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만한 부분은 원고가 고의적으로 피해학생을 밀었던 행위이고, 피해학생의 치아 7개가 손상된 부분은 원고의 의도가 아니라 불의의 사고에 해당한 것이어서 학폭위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높음으로 판정한 것은 과도한 것"이라며 "사회봉사 조치는 상급학교 입시 등 학생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게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최근 학교폭력을 엄격하게 다루는 사법부의 기류와 어긋나는 판결"이라고 분석이 나온다.

교육당국이 학교폭력 가해자는 대입 정시와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도 결이 다르다는 것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